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12 . 18 평창군수(환경복지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12. 20
- 다. 상정일자 :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조례특위('99.12.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가. 제 안 이 유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합되게 개정하고 이와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기위함.

나. 주 요 내 용

-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 확대 운영(안제4조 및 제5조)
-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 폐기물 처리업 허가조항을 삭제
 - 폐기물처리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삭제
 -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조항 삭제
-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규정신설(안제11조)
-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항 신설(안제13조 내지 제22조)
-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조항신설(안제23조내지 안제30조)
-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조항 신설(안제25조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해성)

- 본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별도규정, 법에 근거가 없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조항 삭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와 본조례와의 통합,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개정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군 전지역으로 하고,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조항과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조항등을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300만원에 대한 포상금 규정신설, 환경부에 장려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 재활용 촉진관련조항 신설,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내용수정 통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인한 폐지조례는 수정 통합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서 법개정과 환경부 장려 준칙안에 따라 환경관련 조례 일원화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개정조례안 1부 . 끝 .